

시애틀 허가

— 도시 서비스 및 허가에 관한 범부처간 시리즈 일부

엔지니어링 검사 절차

2014년 9월 갱신

시애틀 소방 규정(SFC 제108.1조)에 소방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소방국의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 제도는 시애틀 소방국 외부의 소방 규정 사안에 관해 정통한 사람들에게 특정 소방 규정 준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최소 5명의 소방 규정 자문 위원회(Fire Code Advisory Board, FCAB) 위원으로 구성된 하부 위원회인 이의심사 위원회가 이의제기서를 심사합니다. 특정 소방 규정 준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1번의 심사만을 이의심사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패널의 자문 권고가 있을 때까지 소방 규정 집행의 유예 여부는 소방서장의 단독 재량에 따릅니다. 비상 소방 규정 집행과 관련된 상황은 이의심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의한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심사 위원회의 심사 요청 사전 단계

이의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먼저 수정 규정 요건(SFC 제104.8조) 또는 대안 자재 및 방법(SFC 제104.9조)을 제안함으로써 준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또한 시애틀 소방국의 다음 담당자와 특정 준수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1. 시애틀 소방국 화재 예방부, 소방국장실(Fire Marshall's Office, FMO)의 관련 검사관,
2. 검사관이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FMO 검사관의 관리자,
3. 관리자가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방국장,
4. 소방국장의 도움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소방서장

5. 이의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관련 사안, 사실관계 및 관련 시애틀 규정 조항(들)을 간결하게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소방서장 및 소장국장 앞으로 제출하기 전에 상기 담당자들과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심사 및 권고

긴급성 등을 사유로 시애틀 소방국과 신청자, FCAB 위원장이 다른 기한을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 명시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1. **서면 심사 요청서:** 신청자는 소방서장이 신청자의 규정 준수 분쟁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심사 위원회 심사 요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FCAB에 심사 요청 통지:** 소방국장은 소방서장을 대리해 신청자의 이의심사 위원회 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 제외) 이내에 FCAB 위원장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때 소방국장은 팩스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FCAB 위원장에게 신청자의 요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심사 범위:** 이의심사 위원회를 선정하기 전에, FCAB 위원장은 신청자의 요청이 이의심사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소방 규정 사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FCAB 위원장은 신청자와 소방국장 모두와 상의하게 됩니다.

법적 고지 사항: 본 고객 지원 안내문(CAM)은 규칙 및 규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본 CAM 상에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각 개인은 모든 규칙 및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이의심사 위원회 구성원 선정:** 이의심사 위원회의 구성원은 FCAB 위원장이 소방국장으로부터 신청자의 서면 심사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선정됩니다. 이의심사 위원회 구성원은 시애틀 시 법령 제 119799호에 따라 선정되며, 최소 5명의 FACB 위원이 이의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산업 대표자 1명, 전문/기술 대표자 1명 및 시민 대표 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성을 사유로 구성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신청자, 신청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신청자의 규정 준수 분쟁을 심사하는 이의심사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시애틀 시 규정 제4.16장의 시애틀 시 윤리강령 참조).
5. **당사자들과 이의심사 위원회의 접촉 제한:** 이의심사 위원회 회의(들) 및 현장 방문 이외에, 신청자도 소방국도 FMO 기술 규정 개발 책임자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준수 분쟁에 관해 이의심사 위원회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6. **회의 일정 계획:** 이의심사 위원회는 FCAB 위원장에 의해 선정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의 규정 준수 분쟁을 심사하기 위해 모임을 가집니다. 기술 규정개발 책임자는 FCAB 위원장, 이의심사 위원회 구성원, 시애틀 소방국 및 신청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의심사 위원회 회의(들) 장소 및 시간을 계획하게 됩니다.
7. **서면 진술서 및 증거:** 신청자와 시애틀 소방국은 각각 규정 준수 분쟁을 고려하기 위한 이의심사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일로부터 최소 7 영업일 전에 관련 사안(들), 사실 및 관련 시애틀 소방 규정 조항(들)에 대한 간결한 서면 진술서를 기술 규정 개발 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진술서에는 전문가 증언 목록을 비롯하여 도면과 같은 관련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소방국은 각 이의심사 위원회 구성원을 위해 각자 자신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와 상대방을 위한 추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 규정 개발 책임자는 이러한 사본을 첫 번째 이의심사 위원회 회의로부터 최소 3 영업일 전에 전달합니다.
8. **회의:** 이의심사 위원회의 자체 위원장을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이어 소방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의심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신청자와 소방국의 구두 발표는 각각 30분으로 제한되며, 여기에는 이의심사 위원회의 질문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심사 위원회에 대한 발표 시간은 각 당사자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각 당사자의 구두 발표는 사실관계, 사안 및 관련 시애틀 소방 규정 조항에 대해 다룹니다. 각 당사자는 이의심사 위원회를 상대로 한 발표에 설계 전문가 또는 제3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현장 방문:** 이의심사 위원회는 소방국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이의심사 위원회의 자체 결정으로 규정 준수 분쟁과 관련된 현장(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의심사 위원회가 현장 방문(들)을 할 수 있도록 현장(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들) 일정 계획은 기술 규정 개발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들)은 소방국 및 신청자 양측의 대리인의 참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이의심사 위원회의 권고:** 이의심사 위원회는 규정 준수 분쟁에 관한 최종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해당 규정 준수 상황에 관한 서면 권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자, FCAB 위원장 및 FCAB의 다른 위원들에게도 이의심사 위원회 권고 사본이 제공됩니다. 이의심사 위원회의 심사 및 자문 권고는 소방서장이 신청자에게 이의제기 전 결정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신청자와 소방국장 모두가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의심사 위원회의 권고는 단순한 자문으로 시애틀 소방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방서장은 이의심사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진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 진술서의 사본을 신청자, FCAB 위원, 시장실 및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은 시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소방서장과 소방국장은 이의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정 후에 신청자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추가 정보

이의심사 위원회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소방국장실의 기술 규정 개발 책임자에게 (206) 386-1450번으로 직접 해주십시오.

소방 규정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제안은 기술 규정 개발 책임자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식을 이용해 서면으로 FCAB에 제출해야 합니다.